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335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19구합1488(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장이 2017. 9. 6.에 한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280,740원의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이 2017. 9. 26.에 한 2017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77,089,610원의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9. 5.에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125,890원의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이 2018. 9. 6.에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81,760,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①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②토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B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1]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금액 단위: 원)

처분청	처분일	귀속년도	부과 대상	세목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redacted]시장	2017. 9. 6.	2017년	쟁점①토지	12,734,690	2,546,050	15,280,740

1)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쟁점①토지 중 [redacted]시 C 전 40㎡, D 전 120㎡, 쟁점②토지 중 [redacted]시 E 임야 754㎡, F 전 300㎡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편의상 본문 기재와 같이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라 칭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2018. 9. 5.	2018년	쟁점①토지	12,613,310	2,512,580	15,125,890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2017. 9. 26.	2017년	쟁점②토지, 쟁점③토지	147,575,770	29,513,840	177,089,610
	2018. 9. 6.	2018년	쟁점②토지, 쟁점③토지	151,468,050	30,292,270	181,760,32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8. 및 2019. 5. 3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8. 및 2019. 8. 30.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쟁점②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G대학교 공과대학 및 건축도시대학원의 여러 전공 교과목 수업을 위한 실습장으로 사용 중이고, 원고는 수년에 걸쳐 실습장 정비, 개선공사 및 관리 등 쟁점②토지의 실습장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므로, 쟁점②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의 면제 대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1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8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5. 1. 1.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던 B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괄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계 취득하였으므로 합병 이후에도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쟁점②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①, ③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만약 쟁점②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은 원고가 B을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세관행을 아무런 귀책 없이 신뢰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②토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참조),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3 내지 10호증, 을나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②토지를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운영하는 G대학교 공과대학의 토목공학전공 학과, 환경조경디자인융합전공 학과, 건축도시대학원 조경설계전공 학과에서 2017년 및 2018년 학기 중 쟁점②토지에서 현장 실습을 실시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환경조경디자인융합전공 학과의 경우 전체 수업 일정에 해당하는 15주 동안 매주 실습장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쟁점②토지에는 자생 수목들이 다양한 군락을 조성하고 있어 자연림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토목공학 및 조경 등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이와 더불어 쟁점②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주장하는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②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쟁점②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고 조림로를 개설하며 비닐하우스 실습장 및 가설건축물인 창고시설 등을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②토지를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③ 오히려 쟁점②토지의 전체 면적은 170,000㎡를 상회하고, 그 지목은 전, 답, 임야 등이며, 쟁점②토지에는 교사동, 강의실 등 교육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로서 그 지목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원고는 B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쟁점②토지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취득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의 교육사업을 위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2) 분리과세대상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아목에서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본문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1995. 12.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을 흡수합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학교법인이 소멸된 학교법인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 경우의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각 권리 · 의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존속 또는 신설된 학교법인의 권리 · 의무 승계 시점이 소멸된 학교법인이 그 권리 · 의무를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아가 '취득'과 '소유'는 그 개념 본질상 분리하여 해석 · 적용할 수 없고, 인격합일설에 의하더라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원고가 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은 분리과세대상인 일부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의 범위에 관하여 "제1항 제2호 라목 · 바목 및 제2항 제4호 · 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정한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려는 정책적인 결단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6. 1. 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따른 입법조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 주장에 대하여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참조),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가 B을 흡수합병한 이후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까지 10여 년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부과처분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까지 정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2009년 귀속분 이후로는 이 사건 2018년 귀속분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일관되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는바(이미 원고가 동일한 주장을 들어 2009년 귀속분 이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차 다투었으나 모두 패소 확정된바 있다), 피고들의 기존의 부과처분에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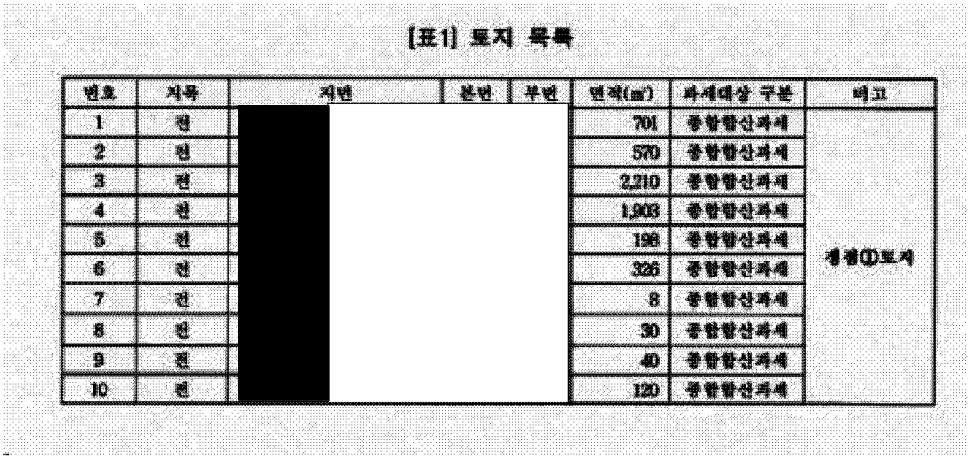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별지 1]



【표1】 토지 목록

번호	지목	지번	본번	부번	면적(㎡)	과세대상 구분	비고
1	전	[redacted]			701	종합합산과세	생략①토지
2	전				570	종합합산과세	
3	전				2,210	종합합산과세	
4	전				1,903	종합합산과세	
5	전				198	종합합산과세	
6	전				326	종합합산과세	
7	전				8	종합합산과세	
8	전				30	종합합산과세	
9	전				40	종합합산과세	
10	전				120	종합합산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별지 2]

[표2] 토지 목록

번호	지목	지번	본번	부번	면적(㎡)	과세대상 구분	비고
1	답	[redacted]			245	종합합산과세	
2	답				227	종합합산과세	
3	전				625	종합합산과세	
4	전				135	종합합산과세	
5	전				1,349	종합합산과세	
6	도로				855	종합합산과세	
7	전				47,875	종합합산과세	
					18	별도합산과세	
8	임야				1,227	종합합산과세	
9	전				89	종합합산과세	
10	전				4,473	종합합산과세	
11	전				714	종합합산과세	
12	전				5,619	종합합산과세	
13	임야				3,144	종합합산과세	
14	전				281	종합합산과세	
15	전				113	종합합산과세	
16	전				1,395	종합합산과세	
17	전				426	종합합산과세	
18	전				1,438	종합합산과세	
19	전				1,941	종합합산과세	
20	전				1,372	종합합산과세	경계②토지
21	전	[redacted]			385	종합합산과세	
22	전				2,631	종합합산과세	
23	전				6,959	종합합산과세	
24	임야				784	종합합산과세	
25	전				3,336	종합합산과세	
26	전				11,600	종합합산과세	
27	답				2,142	종합합산과세	
28	전				5,670	종합합산과세	
29	대지				251	종합합산과세	
30	전				29,105	종합합산과세	
31	전				1,276	종합합산과세	
32	전				162	종합합산과세	
33	전				993	종합합산과세	
34	전				653	종합합산과세	
35	전				26,661	종합합산과세	
36	전				300	종합합산과세	
37	전				140	종합합산과세	
38	임야				1,289	종합합산과세	
39	임야				4,304	종합합산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별지 3]

[표3] 토지 목록

번호	지목	지번	본번	부번	면적(㎡)	과세대상 구분	비고
1	전	[redacted]			546	종합합산과세	별경③토지
2	전				1,077	종합합산과세	
3	전				674	종합합산과세	
4	전				248	종합합산과세	
5	전				231	종합합산과세	
6	전				23	종합합산과세	
7	전				93	종합합산과세	
8	전				89	종합합산과세	
9	전				367	종합합산과세	
10	전				119	종합합산과세	
11	전				146	종합합산과세	
12	전				132	종합합산과세	
13	전				577	종합합산과세	
14	전				635	종합합산과세	
15	전				364	종합합산과세	
16	전				331	종합합산과세	
17	전				136	종합합산과세	
18	전				149	종합합산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별지 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 제1항제2호라목·바목 및 제2항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⑨ 제1항제2호라목 · 바목 및 제2항제4호 · 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